

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. 9. 15 선고 2022가단8999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대한민국

피고A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2. 9. 15.

주 문

1.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에 관하여 2018. 11. 29.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에 대한 계약을 37,416,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37,416,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이균철

별지